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승원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555
----------	-------

발의연월일 : 2025. 12. 23.

발 의 자 : 김승원 · 김남희 · 박해철
한병도 · 이연희 · 이재강
이정문 · 위성곤 · 박선원
박상혁 · 김동아 · 박수현
민병덕 · 서미화 · 안태준
이광희 · 김용만 · 김선민
이학영 · 최혁진 의원
(2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유출등을 알게 된 경우 정보주체에게 통지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또는 전문기관에 신고하도록 정하고 있음.

그런데 통지 및 신고 이후의 개인정보처리자의 사후 대응 과정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고의무가 정해져 있지 않아 피해 확산 방지, 복구 조치 이행 등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고,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개인정보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처리자가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그 계획을 제출하도록 의무화하여 사

후 대응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여 개인정보 유출등에 따른 대응체계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4조의2 신설 등).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8항 전단 중 “제34조의2”를 “제34조의2, 제34조의3”으로 한다.

제31조의2제1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제34조의2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호계획 제출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
를 ““유출등”이라 한다”로, “알려야”를 “개별적으로 알려야”로 한다.

제34조의2를 제34조의3으로 하고, 제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4조의2(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호계획 제출) ① 제34조제3항 본문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유
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사항
2. 유출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
3.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하고, 그 내용

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75조제2항에 제1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의2. 제34조의2제1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5. 제3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의 보호계획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호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항 및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인정보의 유출등이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생략)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① ~ ⑦ (현행과 같음)
⑧ 수탁자에 관하여는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제21조, 제22조, 제22조의2, 제23조, 제24조, 제24조의2, 제25조, 제25조의2, 제27조, 제28조, 제28조의2부터 제28조의5까지, 제28조의7부터 제28조의11까지, 제29조, 제30조, 제30조의2, 제31조, 제33조, 제34조, 제34조의2, 제35조, 제35조의2, 제36조, 제37조, 제37조의2, 제38조, 제59조, 제63조, 제63조의2 및 제64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수탁자”로 본다.	⑧ ----- ----- ----- ----- ----- ----- ----- ----- -----제34조의2, <u>제34조의3</u> ----- ----- ----- ----- -----.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개인정보처리자로서 매출액, 개인정보의 보유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	제31조의2(국내대리인의 지정) ① ----- ----- ----- ----- ----- -----

리하는 자(이하 “국내대리인”이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내대리인의 지정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2. (생략)

<신설>

3. (생략)

② ~ ⑤ (생략)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
(이하 이 조에서 “유출등”이라
한다)되었음을 알게 되었을 때
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보주체
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알
려야 한다. 다만, 정보주체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
라 통지를 갈음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1. ~ 5. (생략)

② ~ ④ (생략)

<신설>

-. -----
-----.

1. 2. (현행과 같음)

2의2. 제34조의2에 따른 개인정
보 유출 등의 보호계획 제출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34조(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
· 신고) ① -----

---“유출등”이라 한다-----

-----개별적으로 알려
야-----.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34조의2(개인정보 유출 등의
보호계획 제출) ① 제34조제3

항 본문에 따라 보호위원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개인정보 유출등의 신고를 한 개인정보처리자는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유형·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호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유출등이 된 개인정보의 해당 정보주체에 대한 지원사항
2. 유출등의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보호조치 강화 계획
3. 그 밖에 보호위원회가 정하는 사항

② 보호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계획을 검토하고, 그 내용이 미흡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일정한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34조의2(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제34조의3(노출된 개인정보의 삭제)

제·차단) (생략) 제75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18. (생략) <u><신설></u> 19. ~ 27.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 4. (생략) <u><신설></u> ④·⑤ (생략)	제·차단) (현행 제34조의2와 같음) 제75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18. (현행과 같음) 18의2. 제34조의2제1항(제26조 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계획을 보호위원회에 신고하지 아니한 자 19. ~ 27. (현행과 같음) ③ ----- ----- -----. 1. ~ 4. (현행과 같음) 5. 제34조의2제2항(제26조제8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보호위원회의 보호계획 보완 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 ④·⑤ (현행과 같음)
--	--